

#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춘곤 의원

안녕하십니까?

강서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춘곤 의원입니다.

오늘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지난 5월 30일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개정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

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
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의2에서 체육시설 예약 취소 위약금 상한액을 10%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의 위약금 상한을 「체육시설의

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르도록(2020.6.) 권고하고 있습니다.

그러나 서울시는 운영상의 이유로 취소 시점에 따라 30~90%의 과도한 위약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

전체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중 청소년들의 사용이 많고 시민들의 예약 취소로 시설 운영의 영향이 적은 생활체육시설(▲풋살구장 ▲다목적구장 ▲인라인하키장 ▲보조경기장 ▲축구장 ▲보조체육관 ▲다목적실 ▲간이야구장)의 취소 위약금을 사용료의 30% ~ 90%에서 일자별로 전액반환, 10%, 30%로 조정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.

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! 그리고 문화체육관광 위원 여러분!

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